

2023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3년 7월 25일(화) 14:0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2명)

■참석의원 : 권인철, 정용식, 유경선, 천성오, 양근제, 김태현, 송영균,
김민수, 반중혁 (9명)

■불참의원 : 정동훈, 강성률, 이강훈 (3명)

4. 안 건

가. 규정 개정(안)

- 1) [심의]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2)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3)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4) 직제 규정 개정(안)
- 5)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6) 장학 규정 개정(안)
- 7)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개정(안)
- 8)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5. 기타 협의 안건 : 대학평의위원회 기능

6. 회의 내용 및 회의결과

- 성진호 간사(이하 '간사')가 성원 보고하다.
 - 재적의원 12명 중 9명 참석
 - 정동훈 의장이 외국 출장 일정으로 본 회의 불참에 따라, 권인철 부의장(이하 '부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다.
- 부의장이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부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본 회의 상정 안건을 설명하고, 기타 협의 안건으로 대

학평위원회 기능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함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관하다.

【규정 개정(안)】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김양래 대학원 교학부장(이하 '교학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스마트융합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석사과정) 폐지
 - 나) 일반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석사과정) 신설 심의
 - 다)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2024학년도 입학정원 확정
 - 라) 일반대학원 계약학과(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 폐지 심의
- 주요 내용
 - 가)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 나) [별표1] 일반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입학정원, 학위종별 개정
 - 다) [별표2] 특수대학원 학과/전공 폐지, 입학정원 개정
-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반중혁 의원이 기존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와 스마트융합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를 이원화하여 운영한 이유를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특수대학원은 재직자 전형을 주로 운영하여 원격수업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일반대학원에서도 원격수업이 허용되어 별도 운영할 필요가 없어 폐지함을 답하다.
- 반중혁 의원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인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해당 학과가 원격기반 학과는 아니므로 원격수업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 요청이 있을 경우 원격기반 학과로 변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을 답하다.
- 정용식 의원이 교육부에 정원조정에 대한 승인 또는 보고의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총 정원 내에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정원조정 사항은 내부적 운영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임을 답하다.
- 유경선 의원이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는 학생이 없어 폐지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또한 이러한 학과 폐지 기준(재학생 수 등)과 학과 폐지에 필요한 사전 준비 절차 등이 있는지 질의하다.
- 교학부장이 학과 폐지에 관련하여 학과간협동과정은 매년 평가위원회에서 학과 폐지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답하다. 홀로그래피3D콘텐츠학과는 담당 교원의 퇴직으로 이미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재학생이 없는 기간이 5년이

넘어 폐지를 결정하게 됨을 답하다.

- 부의장이 향후 학과간협동과정 개·폐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학과 운영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천성오 의원이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과 개·폐에 대한 사항과 소속변경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준에 대한 검토 및 특수대학원의 사정, 재학생 의견 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하다.
- 부의장이 찬반 의사를 묻고, 각 의원들이 거수로 찬반의사를 표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출석의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 부의장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2) 다전공 및 연계·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정석재 처장(이하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2023-제1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의결사항(2023.05.10.) 적용
 - 나) '인공지능반도체연계전공'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 연계전공명 : 인공지능반도체연계전공
 - 인공지능반도체 융합인력 양성사업(교육부,과기정통부)선정에 따라 '인공지능반도체연계전공' 개설
 -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상 여러 학과가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제공해야만 하는 다학제간 융합전공으로 '인공지능반도체연계전공' 신설 필요
- 주요 내용
 - 가) 제5조(이수학점)
 - [별표1]연계전공별 이수학점표 개정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3)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최근 교육방법 및 교과목 운영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수업 운영 관련한 서식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나) 휴강 및 보강 관련 서류 작성 방식 변경에 따른 현행화
 - 규정에서 정하는 '[별지서식 제1호] 보강계획서'와 '[별지서식 제2호] 보강확인서'는 현재 광운대학교종합정보서비스(KLAS)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서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종이사식을 삭제하여 광운대학교종합정보서비스(KLAS)의 양식으로 일원화
- 주요 내용
 - 가) 제10조(휴강 및 보강)
 - 나) [별지서식 제1호] 삭제
 - 다) [별지서식 제2호] 삭제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4) 직제 규정 개정(안)

- 성진호 팀장(이하 '평가감사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선정에 따른 조직 신설
 - 사업 운영기간 : 협약일~2025.05.31.
 - 직제명 : 참빛인재대학지원사업단, 성인학습성공센터
 - 나) SW중심대학사업 종료에 따른 조직 폐지
 - 사업 운영기간 : 2017.03.~2023.02.
 - 2023년 신규 선정평가 결과 : 지원제외
 -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한 대학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할 전담부서 신설
 - 직제명 : 안전관리팀
- 주요 내용
 - 가) 제3조(기구)
 - SW중심대학사업단 폐지
 - 참빛인재대학지원사업단 신설
 - [별표 1] 기구표 수정
 - 나) 제4조의 4(교육혁신원의 조직) : 성인학습성공센터 신설
 - 다) 제20조의 2(관리처의 조직) : 안전관리팀 신설
 - 라) 제40조(SW중심대학사업단장), 제40조의 2(SW중심대학사업단의 조직) 삭제
 - 마) 제46조(참빛인재대학지원사업단장) 및 제46조의 2(참빛인재대학지원사업단의 조직) 신설
 - 바) 제50조(보직) : 조직 개편사항 반영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천성오 의원이 참빛인재대학지원사업단은 사업종료되면 폐지함이 이해되나, 성인학습성공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이는 참빛인재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의 성인학습자를 지원하는 부서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답하다.

- 반중혁 의원이 기구표에 기타 조직에 대한 표현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개진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규정 TF'에서 향후 일괄 정비할 예정임을 답하다.
- 부의장이 정규 조직의 형태가 아닌 해당 직제는 공통의 카테고리로 묶기보다는 현행처럼 개별 나열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개진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열거방식에서 볼 때 위계로 판단될 수 있어 기구표는 수정이 필요함을 답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5)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평가감사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직제 신설 및 폐지로 인한 개정
 - 관리처 안전관리팀 신설
 - 교육혁신원 성인학습성공센터 신설
 - SW중심대학사업단 폐지
 - 참빛인재대학지원사업단 신설
- 주요 내용
 - 가) 제19조(안전관리팀) 신설
 - 나) 제22조(교육혁신원) 개정 및 제22조의7(성인학습성공센터) 신설
 - 다) 제31조(SW중심대학사업단) 폐지
 - 라) 제34조(참빛인재대학지원사업단) 신설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유경선 의원이 안전관리팀 사무분장은 몇 명의 직원이 담당하는지 질의하다.
- 이상원 처장(이하 '관리처장')이 신규 채용인력을 포함하여 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안전관리팀을 구성할 예정임을 답하다.
- 유경선 의원이 전결권 범위를 포함하여 명확한 R&R 설정되어 인력관리가 필요함을 개진하다.
- 관리처장이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대학마다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만드는 추세이며, 본교와 비슷한 규모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을 답하다. 교육부에서 모범사례로 설명하는 순천향대는 총장직속기구로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여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함을 설명하다.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규모로는 만들 수는 없어 본교와 비슷한 조직으로 신설하고 있음을 부연하다.
- 유경선 의원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실험실 안전관리가 분리되어야 함을 개진하다. 연구실 안전관리자는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 시에 안전관리자

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지 않으면 책임질 의무가 없으므로 순천향대는 이를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다. 자격요건을 위임하는 것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사무분장에 반영하여야 함을 개진하다.

- 관리처장이 시설관리팀에 현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음을 설명하고, 안전관리팀으로 해당 사무분장이 이관되면 선임된 안전관리자 역시 안전관리팀으로 전보되는 것임을 설명하다. 신규 총원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팀장1인, 실무직원 2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배석한 김재요 처장(이하 '기획처장')에게 보충 발언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현행 규정 중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이번에 이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직제로 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해당 팀에서 재검토하여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사무분장은 각 팀별 업무의 구분을 위한 규정이므로 해당사항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사항임을 부연하다.
- 부의장이 신설하는 안전관리팀(또는 안전관리자)이 그에 적합한 책임과 권한, 예산 전권을 부여받아 교내 시설물 및 연구(실험)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무분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문내용을 정리하고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6) 장학 규정 개정(안)

- 박세규 처장(이하 '학생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외국인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달리 해당 장학금 성격에 맞는 지급 제한이 필요
 - 나) 봉사장학금 관련 야간학과의 단서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삭제
 - 다)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봉사단 학생봉사대에 봉사장학금 지급 필요
- 주요 내용
 - 가) 제14조(장학금 지급제한) : 외국인장학금의 지급제한은 따로 정하도록 함
 - 외국인장학금의 지급제한을 해당 장학금의 성격에맞게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 나) [별표 1] 장학금 종류별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
 - 봉사장학금 관련 야간학과의 단서조항 삭제
 - 2014년, 주간학과(140학점)와 야간학과(120학점) 간 졸업이수학점 차이를 고려하여 야간학과는 별도의 이수학점기준을 둬.(주간학과 : 17학점 이상, 야간학과 : 15학점 이상)
 - 2017년, 주간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이 축소(이공계 :133학점, 인문계 : 130

학점)됨에 따라 봉사장학금의 이수학점기준도 야간학과와 동일한 15학점으로 개정하여 단서조항이 효력을 상실함.

다) [별표 2] 봉사장학금 단체별 지급인원 및 금액

- 사회봉사단 학생봉사대에 봉사장학금 신설
- 대학 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봉사단 학생 봉사대 대장, 부대장에게 봉사장학금 지급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태헌 의원이 사회봉사단 봉사장학금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사전 의견을 자문받았음을 설명하다. 학생 '봉사활동'에 관하여 등록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점과 해당 봉사내역이 홍보되거나 잘 공개되지 않아 어떤 봉사활동을 해왔는지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음을 설명하다.
- 김태헌 의원이 봉사장학금 지급 금액은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수준이 적합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개정(안)과 같이 '학생봉사대 대장'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공감할 수가 없다는 학생회 의견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회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액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학생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해당 장학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임을 부연하다. 코로나 시국에는 사회봉사단이 많이 활동하지 못하였지만, 현재 여러 팀으로 구성하여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활동 내역이 홍보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함을 부연하다.
- 기획처장이 기획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을 때는 해당 조항은 신설항목으로 이전에는 봉사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개정 취지 설명 시에 이전에 지급하던 항목으로 설명하면서 코로나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설명하여 '신설' 조항인지 확인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신설하는 항목으로 정정하여 설명하다.
- 부의장이 규정이 개정되고 나고 이후 시행하면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개진하다.
- 김태헌 의원이 개정(안)이 과거에 없던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 설명을 정정한다면,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전에도 없었던 것이므로 사회봉사단 활동에 대한 장학금액 지급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학금보다 회의비 지원 등의 활동비 지원이 적합하다고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사회봉사단의 활동 내용 및 수준이 다른 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적합하다는 결정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형평성에 대한 사항은 이후에 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하다.
- 김태헌 의원이 학생봉사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 것보다 해당 활동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오히려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학생봉사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봉사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하는 취지임을 부연하다.
- 천성오 의원이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활동 실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 원칙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보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유경선 의원이 형평성을 위하여 봉사장학금 지급하는 명단을 공개하는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여러 이유로 전체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음을 설명하다.
- 김태헌 의원이 총학생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학생회 명목으로 받는 봉사장학금 명단은 각 단과대학 교학팀과 총학생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사회봉사단에 대한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을 대신하여 회의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본건을 자문대로 안건을 종결하다.**

7)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개정(안)

- 학생처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국방부 및 육군학생군사학교 평가 및 검열 등을 고려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기타기관에서 대학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기관으로의 직제 개편 필요
 - 나) 우리대학 학군사관 후보생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및 치료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규정 신설이 필요
- 주요 내용
 - 가) 제3조(직제편성) : '기타기관' 자구 삭제 및 '대학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 하며' 자구 삽입
 - 나) 제7장(학군사관 후보생 재해보상 및 치료) 신설
 -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 제17조(보상), 제18조(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치료), 제19조(보상절차), 제20조(치료비용의 신청 등) 조문 신설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부의장이 학군단 운영위원회 안건(첨부자료) 내용 중에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조항이 해당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급한 것인지 질의하다.
- 학생처장이 평가와 관련한 개정 취지를 설명하다.
- 김민수 의원이 '기타기관'이 직제 규정의 기구표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개진하고 기구표의 그림 수정이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8)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 최창호 팀장(이하 '기획예산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가) 본교 학생, 교직원 및 외부단체가 본교의 강의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시설물(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 제정 예정
 - 나) 본 규정에 해당 지침 제정의 근거 조항 신설
- 주요 내용
 - 가) 제12조(공간사용료) 제6항 신설
- 부의장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태현 의원이 개정 취지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듣지 못한 경우, 해당 규정만 보면 '학생, 교직원' 자구를 빼는 것이 오해가 없지 않으나 질의하다.
- 기획예산팀장이 해당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함을 답하다.
- 부의장이 향후 지침의 내용(안)을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성원의 오해가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제안하다.
- 천성오 의원이 '승인을 얻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의견을 개진하다.
- 부의장이 이에 지침과 세칙의 제·개정 절차가 명시화되어있는지 질의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규정류 관리 규정에는 지침과 세칙 등은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을 답하다.
- 부의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침과 세칙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평가감사팀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답하다.
- 부의장이 '승인을 얻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다.
- 천성오 의원이 삭제하는 것이 아닌 '얻어'라는 자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라고 수정하는 것을 의견 개진하였음을 부연하다.
- 김민수 의원이 개정(안)의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라는 문구는 총장의 의견을 사전에 받아서 그 내용대로 지침을 만든다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개진하다.
- 부의장이 배석한 기획처장에게 개정(안)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현행 학칙에서도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와 '받는다'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특별하게 대학에서 한 가지의 표현으로 통일되어 사용하지 않으므로 '얻어'라는 자구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의원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장이 **본건을 자문없이 안건을 종결하다.**

7. 기타 협의 안건

- 부의장이 기타 협의 안건을 설명하고, 심의안건에 대하여 표결 시에 찬/반에 대한 실명을 회의록에 기입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부의장이 제안한 김태헌 의원에게 보충 발언이 있는지 질의하다.
- 김태헌 의원이 없다고 답하다.
- 정용식 의원이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토의하고, 발언자의 실명을 회의록에 기입하고 있으므로 표결 시에 실명을 기입하면 발언자는 토의 과정에서 개진한 의견대로만 표결하게되어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개진하다.
- 부의장이 천성오 의원에게 발언을 요청하다.
- 천성오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모두 이해되므로 표결 시에 의견을 밝히 고자 함을 답하다.
- 김민수 의원이 동의하다.
- 부의장이 이에 대하여 의결요건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고, 대학평의회 회 심의안건에 찬성/반대 표결을 실명으로 회의록에 기재함에 거수 방식으로 표결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의결내용 : 출석의원 9명 중 5명 찬성으로 “대학평의회 심의안건 찬/반 표결은 실명으로 회의록에 기재함”을 가결**
- 부의장이 본 안건 종료 후에 진행되어 제3차 회의록은 기존대로 작성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부터 심의안건 기록 시에 이를 적용하기로 하다.
- 부의장이 ‘대학평의회 기능’ 협의 안건을 설명하고,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제2차 회의에서 ‘타 대학 대학평의회 기능에 대한 사례 조사’를 대학평의회에서 요청함에 따라 첨부 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설명하고,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다.
 - (1-가) 대학평의회 기능 : 관련 법령 및 교내 규정, 타 대학 규정, 타 대학 대학평의회 회의 상정 안건 등
 - (1-나, 다) 법령 및 심의범위, 본교 대학평의회 심의범위 협의한 현황 (2007, 2012), 본교 대학평의회 회의안건(2007~2023.)
 - (1-마) 교육부 질의회신 자료
- 기획처장이 특별규정을 적용받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30개 대학을 조사하였으며, 그중 비공개 정보로 설정된 2개 대학의 회의록은 확인할 수 없었고 공개된 28개 대학 대학평의회 회의록에서 안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를 정리함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28개 대학 중에서 27개 대학은 학칙을 제외한 규정은 대학평의회 상정하여 검토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유일하게 상정하여 전체 규정을 검토하는 대학은 1개 대학이었으며 서울시립대학교가 이에 해당함을 설명하다. 그러나 운영방식은 본교와 달리 서면으로 심의하는 방식이었음을 부연하다.
- 또한, 기획처장이 대학평의회 기능 중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문안건으로 상정한 대학이 있었으며, 고려대, 서울여대, 상명대임을 설명하고, 고려대와 서울여대는 학과의 신설 및 개편 시에 교육과정을 자문하고 있

고, 상명대는 교양교육과정 또는 비교과교육과정 편성안 자문 등을 안건 상정하여 자문함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본교 대학평의회 심의범위 협의한 현황과 본교 대학평의회 회의안건을 설명하고, 대학평의회 구성이 변경된 시점 또는 기획처 담당직원 변경으로 심의, 자문, 보고안건에 대한 협의한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어왔음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의장 및 부의장과 별도로 사전회의에서 교육부 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질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았음을 설명하다. 교육부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2년도에 대학평의회에서 '학칙의 개정이 수반하는 사항으로 상정하는 규정의 범위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한 것임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 제 규정에 대한 심의는 대학평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다음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본교 규정류 관리 규정이 2017년 개정되어 규정의 제정, 개폐는 대학평의회 상정하는 것이 절차임을 설명하다.
 - (1-라) 규정 제정 및 개폐 안건 분류
 - (1-바) 학칙 범위
- 부의장이 현재 규정류는 자문안건으로 분류하나 이전에는 부결 및 수정의결 등 심의안건으로 다루었음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안건 '상정'의 문헌적 의미를 고려하면 토론의 과정이 전제된 것으로 단순 보고를 의미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대학평의회 '심의'와 '자문'에 대한 실질적으로 효력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학칙'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칙의 범위와 학칙의 파생 범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 김태헌 의원이 대학평의회 구성에 학생대표가 포함되는 이유와 동일하게 학생대표로서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평의회에서 규정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를 계속 해야한다고 개진하다. 학생대표가 학교의 모든 주요한 위원회에 위촉되어있지 않으므로 대학평의회에서라도 이러한 논의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부연하다.
- 정용식 의원이 대학평의회는 구성원 의견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규정에 대하여 상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하고, 분류체계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다.
- 김민수 의원이 대학평의회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여러 구성원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고민하는 자리이므로 계속 상정해야 한다고 개진하다.
- 반중혁 의원이 동의함을 답하다.
- 송영균 의원이 학생들이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자문 사항이며 계속 안건

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개진하다.

- 양근제 의원이 동의함을 답하다.
- 유경선 의원이 본 안건 중에 장학 규정 개정(안)은 심의안건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시간을 거쳐 논의하였음을 설명하고, 자문안건 중에서도 대학평의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었음을 부연하다. 현행 규정에 학칙 이외의 규정은 심의안건으로 올릴 수 없으므로 기타 조항을 넣어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안건에 대한 일부 의결 권한도 필요하다고 개진하다.
- 부의장이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현행 규정류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을 제외한 규정은 자문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류 자문안건이더라도 대학평의원회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학평의원회 기타 협의 안건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설명하다.
- 부의장이 이에 대한 기획처장의 의견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현재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규정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해왔더라도 해당 법령이 정한 권한 내에서 심의 및 자문이 이루어져야 함을 개진하다. 의결, 심의 권한이 없는 안건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부연하고, 자문은 법령에서 정한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어야 함을 설명하다.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한 규정을 자문을 한다고 해석해야 함을 설명하다. 모든 규정 또는 일부 규정을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류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총장이 결정하는 범위에 따라 자문안건으로 성립함을 개진하다. 또한 대학평의원회 제3조제7호에 따라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안건임을 부연하다. 대학평의원회의 협의 안건이 정리되면 기획처장이 총장보고 후에 총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임을 개진하다.
- 부의장이 학칙 이외 규정은 자문안건으로 다루어 왔으며 대학평의원회 기능에서 자문안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정되어왔음을 설명하다. 이는 본교 규정류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규정의 절차에 의한 것임을 부연하다.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닌 규정도 많으므로 규정류 관리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학평의원회 상정하는 규정은 무엇인지 안건분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향후 기획처에서 규정류 관리 규정의 개정(안) 발의 등 수정 제안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인 기획처장과 의장단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개진하다. 불참 의원 의견은 별도로 청취하도록 할 것임을 설명하다. 다음 절차는 8월 중 의장 귀국 이후에 수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처장과 협의과정을 거쳐 변화된 사항은 제4차 회의에서 적용하게 될 것임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과정 상에 문제되는 사항으로 '규정의 해석'은 총장이 해석하는 사

항임을 개진하다.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기획처장과 협의하여 총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권한과 절차상 맞지 않음을 설명하다.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해석은 총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대학평의원회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개진하다. 이에 대학평의원회와 기획처장이 협의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음을 설명하다.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기획처장이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다.

- 부의장이 규정류 관리 규정에 의하면 '규정의 해석'은 총장이 해석하는 사항을 의미함을 설명하고, 다만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해석은 많은 여지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자문도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 부의장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고,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안건을 종결하다.**
- 의원 전원이 동의하다.

8. 폐회

- 부의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와 자문, 기타 협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붙 임 : 회의자료 각 1부. 끝.

2023년 7월 25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정 동 훈 (서명)

부 의 장 권 인 철 (서명)

평 의 원 정 용 식 (서명)

평 의 원 이 강 훈 (서명)

평 의 원 유 경 선 (서명)

평 의 원 강 성 룰 (서명)

평 의 원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양 근 제 (서명)

평 의 원 김 태 현 (서명)

평 의 원 송 영 균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반 중 혁 (서명)